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구단12207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424,000원, 지방교육세 1,742,400원, 농어촌특별세 871,200원에 대한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가. 원고는 2015. 1. 12. [redacted]시 B을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를 'C'로, 업종을 전기설계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8. 4. 12. [redacted]시 D 공장용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17,424,000원, 지방교육세 1,742,400원, 농어촌특별세 871,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원고는 창업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사업자등록일 당시부터 판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고자 하였으나, 세무서 측으로부터 위 B에는 이미 다른 제조업사업장이 있는 관계로 중복하여 제조업 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전기설계 서비스업을 권고하여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2015. 1. 12. 사업자 등록시부터 전기판넬 제조업을 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위하였던 점, 적어도 2015. 10. 15.에 [redacted]시 E에 사업장을 마련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서비스업무와 제조업의 각 업무개시 시점이 극히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제조업을 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고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동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그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창업중소기업의 전제로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이 제조업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사업장의 2015 및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유형자산 계정과목에는 기계장치 등에 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부품도 직접 구입하지 않았으며, 발주자가 제공한 부품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체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으로 구상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 기성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발주처가 의뢰한 시방서에 따라 발주처의 공장기계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콘트롤 판넬을 원고의 사업장에서 만드는 일부 작업을 한 다음, 그 판넬을 이동하여 발주처 공장의 기계들과 연결하고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시운전하는 나머지 공정을 수행하였던 점, ③ 이러한 원고의 사업은 발주자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는 방식이고, 전체공정 중에서 발주자 공장에서 설치하는 작업의 비중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판넬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공장에 있는 각종 설비가 원활하게 연결되어 공장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원고의 업무인 점, 결국 원고의 업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발주자가 마련한 시방서에 따라 발주자가 마련한 부품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공장의 설비자동화가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용역, 서비스업의 행태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2015. 1. 12.자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은 원고의 업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판넬 제작이라는 일부 공정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2015. 10. 15.자 제조업 업종추가 사업자등록은 당초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영업확장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은 업종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모두 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고, 2015. 10. 15.자 제조업 업종추가는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판사 김형원